

실버우대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실버우대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 ④ 특별우대금리 :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3%p 제공
 1. 만 50세 이상의 실버 고객이면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이거나 이 예금을 3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연 0.1%p
 2. 4대 연금을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 0.1%p

※ 4대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을 이 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연 0.1%p
 4.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 이상인 경우 연

0.1%p

5.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⑥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재예치)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에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실버고객이면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이거나 실버우대정기예금을 3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4대 연금 수령」은 신규 가입시 증명서(연금수령확인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통장 등)를 제출하거나 수시입출식 예금 전산 조회(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까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

개월 이내(신규 가입일의 전전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입출식 예금 거래실적」은 수시입출식 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 가입일(재예치일)의 전전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전일까지)로 한다.
5.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 가입일(재예치일)의 전전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전일까지)로 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분할해지】

- ① 가입기간(재예치기간) 동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재예치) 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천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자동 재예치】

- ① 이 예금은 만기일에 원리금(또는 원금)을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 서비스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금 및 이자' 중 선택 가능하며 원금만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는 본인명의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자동 입금된다.
 -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인 경우 '원금'만 재예치 가능
 -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가 불가함

3. 적용이율은 자동 재예치 시점의 기본이율 및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5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